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5

발의연월일: 2020. 6. 24.

발 의 자:민홍철・김병욱・기동민

김두관・천준호・서영교

고영인 · 안규백 · 신정훈

박성준 • 이병훈 • 이재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'국가자치분권회의'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「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(안 제165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2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 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장제4절에 제1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5조의2(국가자치분권회의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 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제165조의2(국가자치분권회의의 |
| |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|
| |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 |
| | 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|
| |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 |
| | 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 |
| | 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. |
| <u><신 설></u> |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자치분권 |
| | 회의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사 |
| | <u>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</u> |
| | |